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가단51228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784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가단5122864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한결, 조선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경식

변론종결 2021. 10. 29.

판결선고 2021.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2019. 10. 1. 체결된 5,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10. 24. 체결된 5,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10. 25.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13.경부터 2019. 6. 12.경까지 변제기를 2019. 8. 16.로 정하여 합계 3억 9,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

나. C은 변제기 이후로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0. 30. C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0.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6248호로 ‘C은 원고에게 3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한편 C은 2016. 9. 8.경 임대인 D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60만 원, 계약기간 2016. 9. 30.부터 2018.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과 D은 위 계약기간 만료 이후 월차임을 32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C은 2019. 10. 1. 임대인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D은 2019. 10. 1. 500만 원, 2019. 10. 24. 500만 원, 2019. 10. 25. 3,000만 원을 C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2019. 10. 1.자 5,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10. 24.자 5,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10. 25.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 D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4,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는바, C과 피고 사이의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이 피고와 위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두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 및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고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9. 10. 4. 200만 원, 2019. 10. 8. 300만 원1), 2019. 10. 28. 3,500만 원2) 이 각각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되었는바, 피고는 D으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 원을 곧바로 C에게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C에게 송금된 4,000만 원은 대부분 C의 거래처(H, I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D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와 C 사이에 증여계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

1)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그 중 피고가 2019. 10. 1. D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3,6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그 중 피고가 2019. 10. 24. 및 2019. 10. 25. D

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